

이문동교회 청년부 회칙

일부개정 2020. 6. 1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문동교회 청년부”(이하 ‘청년부’)이다.

제2조(목적)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 신앙을 굳건히 하고 서로에게 권면하여 영적 성장을 통한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도모한다.

제3조(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문동교회 내에 둔다.

제4조(구분) 본회는 신체적, 문화적 연령에 따라 초점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부, 2부, 3부로 구분하고 각각을 갈렙과 여호수아, 청년부부로 명명한다.

①1부(갈렙) : 20세~27세

②2부(여호수아) : 28세 이상

③3부(청년부부) : 청년세대의 예배 문화를 공유한 기혼자 (문화적 연령)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20세(만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이상 또는 20세가 되지 아니하였어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이어야 하며, 본 예배에 4회 이상 출석한 자로 본회 해피링크 새가족팀에서 주관하는 양육 과정을 수료하여 각 팀에 배정된 자 또는 본 교회 고등부 출신인 자로 제한한다.

②본회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만 회원의 권리를 부여한다.

③청년부부는 본회에 소속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목회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집회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본회의 회칙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회의 모든 집회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본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회원은 각종 회의 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자격 강등 및 취소)

①유학, 군입대, 취업, 질병 등으로 교회 출석을 1년 이상 하지 못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구별한다.

②타 교회에 등록하거나 무단으로 1년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취소된다.

제9조(기구) 본회의 의결기구는 이문동교회 청년부 총회(이하 ‘청년부총회’) 및 운영위원회(임원회)로 구성된다.

제10조(특별기구)

- ①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그 구성은 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

제2장 청년부총회

제11조(지위) 청년부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12조(역할) 청년부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하며, 이는 회칙개정을 포함한다.

제13조(의장)

- ①의장은 청년부총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청년부총회를 대표한다.
- ②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14조(소집) 청년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①소집권자는 회장이며, 회장에게 위임된 사람이 소집할 수 있다.
- ②정기총회 : 매년 1회, 10월 마지막 주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총회 : 임원회 과반수의 발의가 있거나 회원의 1/3 이상이 의안을 제안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④회장은 정기총회의 경우 2주, 임시총회의 경우 1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정족수)

- ①개회정족수 : 개회 전 3주 동안 평균출석인원(팀에 속하여 예배에 참석한 자)의 2/3
- ②의결정족수 : 총회 참석 인원의 절반

제16조(업무)

- ①정기총회 : 그해 사업에 관한 서기보고 및 회계보고를 진행하며,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에 관해 토의 및 결의한다.
- ②임시총회 : 해당 안건에 관해 토의 및 결의한다.

제17조(요구권) 청년부총회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서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철회) 청년부총회는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의장 재량 하에 12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일주일 후에 재회한다.

제19조(안전상정) 이 조항은 회칙개정에 관한 안전상정을 포함한다.

- ①임원회는 안전을 개회 일주일 전까지 상정한다.
- ②회원은 개회 일주일 전까지 안전 발의서를 작성하여 회칙개정에 관한 안전을 포함하여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붙임 7 참조)

제20조(의결권) 본회의 의결권은 본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자가 가진다.

제3장 임원회

제21조(지위) 임원회는 본회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2조(구성)

- ① 임원회는 1, 2부 회장, 총무, 서기 및 회계로 구성된다. 회장, 총무, 서기 및 회계를 정임원이라 칭한다.
- ② 차기년도 임원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구성을 완료해 그 주에 공지한다.
- ③ 회장은 직접선거를 통해, 총무·서기·회계는 선출된 회장이 교역자 및 현임원단과의 협의 하에 선임하여 구성한다. (붙임 1 참조)
- ④ 정임원의 필요에 따라 교역자 및 임원회의 협의 하에 정임원 한 명 당 부임원 한 명을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자격) 본회의 임원은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회장은 본 교회에 2년 이상 출석한 자, 총무·서기·회계·부임원은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제한한다.

제24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1월~12월)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업무 및 권한) 본회의 유익을 위하여 임원은 필요한 부서와 부장, 또는 회장 직속으로 위원회와 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① 회장 : 청년부를 대표해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무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 서기 : 본회의 제반 문서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회계 : 본회의 제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6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4장 선거

제27조(선거 시기)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문동교회에서 실시되며, 부득이 그 날 하지 못하는 경우 10월 중에 실시한다. 선거는 장소를 이동해 연장할 수 있고, 1차 시기에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에는 그 다음 주일에 실시한다.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 전반의 업무를 관장, 총괄하는 청년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 ② 위원은 현 임원단이며 회장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제29조(보궐선거)

- ① 회장의 유고시, 이전 재임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유고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 ③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0조(후보 등록)

- ① 회원들은 회칙 제 3장 제 23조(자격)에 준한 회원을 최초 정기총회 개최 1주 전부터 최초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여 추천할 수 있다(붙임 8 참조). 또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추천을 할 수 있으며 동의, 재청을 거쳐 후보로 등록된다.
- ② 회원 1인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는 1인으로 제한한다.
- ③ 1부 회장은 1부 회원들만, 2부 회장은 2부 회원들만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다.
- ④ 후보로 등록된 회장 후보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권 의사를 표할 수 없으며, 한 주간 기도를 한 후 다음 정기총회에 다시 모여 의사를 표한다. 다음 정기총회에서 후보자들이 모두 기권의사를 표한다면,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다시 후보를 받고 그 후보자들은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 다음 정기총회에서도 후보자들이 모두 기권의사를 표한다면, 그 자리에서 후보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선출에 들어간다.
- ⑤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단, 최초 정기총회 개최 전과 최초 정기총회에 한해 피추천자가 회칙 제 3장 제 23(자격)에 준하는 회원이라면 최초 정기총회에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최초 정기총회에서 동의, 재청을 거쳐 후보가 될 수 있다.

제31조(방법)

- ① 직접선거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결정하며, 1회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인을 재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로 한다.
- ② 임원회가 확인한 투표용지에 적은 것만 유효하다.
- ③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명만 적을 수 있다.

제32조(투표권) 본회의 투표권은 본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자가 가진다.

* 기존 '마을' 이라는 명칭에서 '양육팀'으로, '마을장'에서 '팀장'으로, '가장'에서 '리더'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장 청년부 팀 모임

제33조(명칭) 본회의 복수의 신앙 공동체를 “양육팀”이라 칭하고 그 아래에 10명 내외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인 “팀”을 둔다.

제34조(목적) 각 팀은 회원들의 신앙 성장과 친목 도모에 목적을 둔다.

제35조(조직)

- ① 양육팀은 각 팀장(長)이, 팀은 팀 리더가 운영한다.
- ② 각 팀마다 총무와 회계를 두어야 하며, 총무와 회계는 팀장이 선임하거나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각 팀의 리더, 총무, 회계 및 팀원 구성은 매년 12월 셋째 주까지 완료되어 12월 마지막 주까지 임원단에게 인적사항이 전달되어야 한다.
- ④ 팀장 유고 시 총무가, 총무 유고 시 회계가 권한을 대행한다.

제36조(팀장)

- ①(지위) 팀장은 팀 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 ②(선임) 팀장은 교역자가 선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권한) 팀장은 팀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임원단 및 다른 팀장, 사역팀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대표) 팀장 가운데 팀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최종 의결권을 지닌다.
- 제37조(새 팀원)** 팀에 새가족이 팀원으로 전입한 경우 새가족팀장이 이를 임원단에게 알려야 한다.
- 제38조(재정)** 팀장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정된 서식을 작성해 추가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붙임 4 참조)
- 제39조(행사)** 각 팀에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는 경우 지정된 서식을 임원에게 제출해 청년부 전체에 고지하도록 한다. (붙임 3 참조)

제6장 사역팀

제40조(명칭) 본회에서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과 기능을 갖춘 생산적인 모임을 “사역팀”이라 칭한다.

제41조(목적) 사역팀은 각 팀의 고유한 기능을 성취하여 팀원들의 친목도모 및 청년부 발전에 목적을 둔다.

제42조(조직)

- ①사역팀은 사역팀장이 운영한다.
- ②각 사역팀마다 총무와 회계를 두어야 하며, 총무와 회계는 사역팀장이 선임하거나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사역팀장 유고 시 총무가, 총무 유고 시 회계가 권한을 대행한다.
- ④(구성) 사역팀은 회원 2인 이상이 계획안을 제출하여 구성을 요청하면 교역자와 임원단의 심사 하에 새로 구성될 수 있다.

제43조(사역팀장)

- ①(지위) 사역팀장은 팀 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 ②(권한) 사역팀장은 팀 내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임원단 및 다른 가장, 사역팀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재정) 각 사역팀장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정된 서식을 작성해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붙임 4 참조)

제45조(행사) 각 사역팀에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는 경우 지정된 서식을 임원에게 제출해 청년부 전체에 고지하도록 한다. (붙임 3 참조)

제7장 재정

제46조(경비)

- ①본회는 청년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다.
- ②본회의 경비는 청년부에 책정된 교회 예산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본회의 목적 내에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보조금과 수익사업의 수입은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48조(예산) 임원회는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제49조(팀 및 사역팀 예산지원)

①임원회는 팀과 사역팀에서 재정 요청 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급한다. (붙임 4 참고)

②각 팀과 사역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에 영수증을 예산 집행 항목별로 정리하여 회계에게 제출한다. (붙임 5 참고)

제50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8장 회칙개정

제51조(발의) 회칙개정을 위한 안건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의 연서에 의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주 전까지 임원회에 상정한다. (제18조 참조)

제52조(의결) 제14조와 동문

제53조(의결공포)

①청년부총회의 의장은 회칙개정 사안의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포한다.

②개정된 회칙은 의장이 총회 후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3조의 2(시행령) 개정된 회칙은 청년부총회 폐회 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9장 예배

제54조(예배) 청년부 공식 예배는 이문동교회 주일 4부 예배로서,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이문동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제55조(예배 총괄) 예배는 예배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다. (붙임 6 참조)

제56조(특순) 예배 시 특송 또는 간증을 특순으로 하며, 희망하는 회원은 지정된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담당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붙임 2 참조)

제10장 부속시설

제57조(시설) 이문동교회 청년부는 부속시설로 청년부실을 둔다.

제58조(위치) 청년부실은 본당 1층 내에 둔다.

제59조(용도) 청년부 제 물품 보관 및 각종 모임 시 사용한다.

제60조(관리) 임원이 총괄한다.

제61조(사용)

①청년부 회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②청년부 회원이 아닌 자가 사용할 때는 임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붙임 1] ※예시 : 2016년도 청년 1부 임원 선임서

2016년도 청년 1부 임원 선임서

직책 :

성명 :

이문동교회 청년부 회칙 제3장(임원회)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귀하를 2016년도 청년 1부 총무로 선임합니다.

청년부 회칙 제3장(조직) 제23조와 제24조에 의거하여 임기는 1년(2016. 1~2016. 12)이며, 청년 1부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부장을 둘 수 있습니다. 총무는 재정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다른 임원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는 2015년 월 일(주일) 시까지 동봉된 ‘선임 거절 사유서’를 청년 1부 회장에게 전달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1 . . .

201 년도 이문동교회 청년 1부

회장

(인)

선임 거절 사유서

다음과 같이 임원 선임을 거절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사유(구체적으로) :

201

성명 : _____ (인)

※이 문서는 소정의 봉투에 넣어 봉인된 것만 유효합니다.

[붙임 2]

예배 특순 계획안

다음과 같이 특순을 계획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일시 :
종류 : 특송 간증
특송인 경우 제목 :
참가 인원 :
✓ 전달 사항 : 동영상 (파일 제목)
음 악 (파일 제목)
자막 가사
✓✓ 필요 사항 : 마이크 (개) 보면대 (개)
기타()

201

이문동교회 청년부

(인)

※이 서식은 특순이 있는 주 일주일 전까지 회장이 받아보아야 하며,
위의 전달 사항 및 필요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송하여야 함.

✓ 동영상, 음악, 자막 또는 가사 : lmd2014@naver.com

✓✓ 마이크, 보면대 등 : 벨엘 팀장(서주형 010-8737-3860)

[붙임 3]

행사 계획안

우리 _____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사를 추진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제목 :

일시 :

내용 :

201

이문동교회 청년부

(인)

[붙임 4]

예산 지급 요청서

우리 _____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 지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내용 :

예산 : 잔액 ()원 중 ()을 요청합니다.

2016. . .

이문동교회 청년부
(인)

[붙임 5]

예산 집행내역 보고서

우리 _____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 음 -

날 짜	사용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2016. . .

이문동교회 청년부

(인)

- * 회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 영수증은 붙이지 말고 집행내역 보고서와 함께 전달바랍니다.
- * 영수증이 없는 내역은 비고에 “영수증 없음” 기재바랍니다.

[붙임 6]

이문동교회 여호수아/갈렙 청년부 예배 매뉴얼

[작성일 2012. 10. 23]

[서식 수정 2012. 12. 29]

1. 예배 콘티

시 간	순 서	담당자	임원역할	비 고
12:50~13:00	본당정리 찬양팀 세팅	임원 벤엘 찬양팀		
	1시 기도회 (12:55 시작)	말은이	1시 기도회 진행	
13:00~13:20	벤엘 리허설	벤엘 찬양팀	기도, 특순, 봉헌, 광고 안내 목사님 물 준비	
13:20~13:25	특순 리허설	총무, 말은이	본당 안내 : 회장1, 해피링크 팀장 방송실 담당 : 회장1	외부안내 : 해피링크
13:25~13:30	목상	방송팀		
13:30~13:31	예배의 부름(사도신경)	목사님		
13:31~13:55	찬 양	벤엘		
13:55~13:58	기 도	말은이		
13:58~14:03	특 순	말은이		특순×→13:58 부터 설교시작
14:03~14:38	설 교	목사님	서기 2명 인원 계수 (→목사님, 부장님께 보고)	
14:38~14:42	광고 및 축복	말은이		
14:42~14:45	봉 헌	말은이	봉헌자 준비 및 안내	
14:45~14:48	결단의 찬양	목사님, 벤엘		
14:48~14:50	축 도	목사님	회장 : 뒷문개방(축도송 시)	
14:50~	파 송	목사님	본당, 목사님 물컵 정리	

※특별 광고 또는 행사가 있을 시, 목사님과 임원단의 상의 하에 예배순서 조정 가능

2. 예배 위원 매뉴얼

담당	확인 내용
예배 찬양 담당 (벤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찬양 가사를 PPT파일로 준비하여 금요일까지 방송실 담당자에게 가사 PPT파일 전달 2. 찬양시간은 13:31에 시작하여 13:55분까지 진행하고, 13:55 정각에 기도가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 3. 찬양 인도자는 '예배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지막 멘트로 정리
기도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배위원 준비기도 모임 : 12:55 본당 뒷편 2. 기도 시간 : 3분 이내 3. 예배시작 전 13:25까지 본당 왼쪽 앞 기도위원석에 앉아 준비 4. 13:28 설교자가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 함께 이동하여 착석 3. 13:55 벤엘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의 후주가 나올 때 강대상으로 이동하여 후주 끝나면 기도 4. 기도가 끝나면 예배 전에 앉았던 기도위원석에 착석하여 예배 5. 기도문을 작성하여 금요일까지 목사님께 메일로 발송하여 확인 메일 : againfor2@hanmail.net
특순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배위원 준비기도 모임 : 12:55 본당 뒷편 2. 특순 시간 : 5분 이내 3. 예배리허설 시, 마이크 및 기타 장비 사용 시 장비 체크 4. 예배시작 전 13:25까지 본당 왼쪽 앞 간증&특송위원석에 앉아 준비 5. 기도시간에 강대상으로 이동하여 특순 준비 6. 기도 후주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특순 시작 7. 특순이 끝나면 앉았던 간증&특송위원석에 착석하여 예배 8. 간증문을 작성하여 금요일까지 목사님께 메일로 발송하여 확인 메일 : againfor2@hanmail.net
봉헌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배위원 준비기도 모임 : 12:55 본당 뒷편 2. 본당 뒤쪽 봉헌위원석에서 봉헌 가운을 입고 예배 3. 광고시간에 봉헌함을 들고 입장 준비 4. 축복 후 '봉헌송' 후렴부분에 가운데 통로로 입장 5. '봉헌송'이 끝나기 전에 강대상 앞 두 번째 계단에 서고, 봉헌기도 후 봉헌함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본당 앞 봉헌위원석에 착석 6. 예배 후 봉헌함과 가운 정리 봉헌함 - 본당 뒤편 봉헌위원석 / 가운 - 새가족실 앞 옷장
광고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배 광고는 임원이 담당 2. 광고 내용은 전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광고PPT는 금요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목사님께 확인 3. 광고PPT는 토요일 오전까지 방송팀 담당자에게 전달 4. 설교 후 기도가 끝나면 시그널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고, 광고 시작 전 그날의 설교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고, "X월 X째 주 광고입니다." 등의 멘트로 광고 시작 5. 동영상 광고 광고 전 영상 - 설교 후 기도가 끝나고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세팅 광고 후 영상 - "영상 보시겠습니다."등의 멘트로 영상 재생
방송 및 PPT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팀은 예배위원 준비기도 모임(12:55) 필히 참석 2. 13:00부터 방송실에 입실하여 방송 장비(마이크, 음향, 영상 등) 및 PPT 내용 점검 3. 예배시간에 방송실 내에서 소란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경건하게 예배 4. 필요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준비할 것 설교 관련 - 목사님 / 찬양 관련 - 벤엘 / 광고 관련 - 임원 5. 모든 자료는 금요일까지 받을 것

3. 임원 업무 분담

업 무	담당자
회의자료 준비 및 진행	회장
기도자 배정 및 안내	서기
봉헌자 배정 및 안내	서기
주보 편집 및 제작 주보관리(청년부 홈페이지 업로드)	총무
광고	총무
회의록 작성	서기
예산 집행 및 결산	회계
특순(특송, 간증)	총무
중보기도(1시 기도회)	회장

※ 특순 담당자(임원) 유의사항

1. 특순 : 특송, 간증
2. 특순 신청을 받고 목사님께 확인
3. 특순은 사전에 특순 담당자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전체 예배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배정
4. 특순 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안내하고, 특순이 있는 일주일 전에 특순자에게 재확인
5. 특순자 예배 준비기도 모임(12:55)에 필히 참석하도록 안내
6. 특순자는 지정된 좌석(예배당 원편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
7. 특송(곡명), 간증(제목) - 주보제작자에게 일주일 전에 통지
- 방송실 담당자에게 금요일까지 통지

※ 축복 담당자(임원) 유의사항

1. 축복 대상 파악
 - 새신자 : 해피링크 새가족팀장
 - 군휴가, 입대, 전역 : 팀장 임원
 - 결혼 : 행정실
2. 광고 후 축복자 호명하여 일으켜 세워 축복송 부르며 축복
3. 축복 시간은 최대한 길지 않게 안내하고,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축복
 - 새신자 - 군 관련 - 결혼 및 유학, 기타
4. 마지막 멘트 : “봉헌 드리겠습니다.“

[붙임 7]

※란은 기입하지 않음.

※안전 번호	
--------	--

안전 발의서

수신 : 청년부 임원단

분류 : 토의사항 건의사항

제목 :

내용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제안자대표 :

※발의하는 안전이 회원들의 동의 및 토의를 거쳐야하는 내용인 경우 토의사항에, 단순한 건의 혹은 질의 사항인 경우 건의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목은 주제가 드러나도록 간명히 기입, 내용은 읽는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안자대표’를 작성하고, 1인인 경우 공란으로 둠.

※이 서식을 한글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임원단 대표 메일 (imd2014@naver.com)로 전송하여야 함.

[붙임 8]

회장 추천서

■인적사항

성명	
기수	

■추천사유

추천사유	
------	--

상기인을 202 년도 청년 부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201 . . .

이문동교회 추천자

(인)